



#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

[농림부 공고 제 2003-47호]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5월 15일  
농림부장관

##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

### 1. 의결주문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축산물가공업중 식육을 단순히 절단하여 처리하는 영업을 식육단순절단포장처리업으로 분리하여 신설하며, 소·말·돼지·양을 제외한 가축을 가축소유자의 소재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당해 장소에서의 도축은 농민과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허용하고, 축산물위생감시 강화를 위해 축산물위생감시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신설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 골자

가.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 등으로 인하여 도살·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로 한정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나. 소·말·돼지·양을 제외한 가축을 가축소유자의 소재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한 도축을 허용함(안제7조제1항제3호 개정)

다. 식용란에 대해 위생감사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제5항)

라.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생물질 등 유해잔류물질과 대장균 등 병원성미생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유해잔류물질 기준 위반 출하농가에 대해 3월의 범위안에서의 출하제한, 특별관리농가 지정 등 출하가축 위생상태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12조의2)

마. 축산물의 위생 지도등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위생감시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두도록 함(안20조의2, 안20조의3)

바. 축산물가공업에서 식육단순절단포장처리업을 분리하여 업종을 신설함(안 제21조제1항)



사. 영업자로 하여금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회수토록 함(안제 31조의 2)

## 법률 제 ○ ○ 호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  
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중 “축산물가공장”을 “축산물가공장·식육단순절단포장처리장”으로 한다.

제4조제5항중 “가공 등은”을 “가공·보존·유통 등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한다는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로 하고, 동항제3호중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를 “자가소비에 사용하거나, 소·말·돼지·양을 제외한 가축을 가축 소유자의 소재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당해 장소에서”로 한다.

제8조제2항중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를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동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육단순절단포장처리업의 영업자”로 한다.

제12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검사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용란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1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 2(유해잔류물질 및 병원성미생물 검사)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

축업의 영업자가 생산하는 식육에 대하여 항생물질·중금속·농약 등 유해잔류물질과 대장균 등 병원성미생물에 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유해잔류물질 검사 결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식육의 원료가축을 출하한 농가에 대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출하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농가를 특별관리농가로 지정하고 연속검사를 실시하는 등 출하가축 위생상태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항목·방법·기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제1항중 “판매를 목적으로”를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은”으로 하고 제1항 내지 제3항중 “검사관”을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때
2. 농림부령이 정하는 대표자 등의 변경사항과 휴지·폐지·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농림부령이 정하는 검사대장을 보관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4. 농림부령이 정하는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한 때

5. 농림부령이 정하는 보고, 지도·감독 등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때 제 2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0조의 2 (축산물위생감시원) ①제 19 조제 1항 내지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 그밖에 축산물위생에 관한 지도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축산물위생감시원을 둔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임명·직무범위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0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0조의 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위촉방법, 업무범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1조제 1항제 8호중 “기타”를 “그밖에”로 하여 동호를 제 9호로 하고, 동항 제 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식육단순절단포장처리업

제 22조제 1항중 “동항제 4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보관업”을 “동항제 4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보관업 또는 제 8호의 규정에 의한 식육단순절단포장처리업”으로 한다.

제 24조제 1항중 “제 8호”를 “제 7호 또는 제 9호”로 한다.

제 3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31조의 2(축산물의 자발적 회수) ①제 22조제 1항 또는 제 2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는 당해 축산물로 인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당해 축산물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 회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 32조제 1항중 “영업자는”을 “누구든지”로 한다.

제 33조제 1항에 제 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제 34조중 “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을 “집유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단순절단포장처리업”으로 하고, “집유실적 또는 축산물 가공품의 생산실적을 시·도지사에게”를 “집유실적, 축산물 가공품 생산실적 또는 단순절단포장육의 생산실적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하며,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 37조제 2항을 제 3항으로 하여 동항중 “제 1항”을 “제 1항 및 제 2항”으로 하고,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 회수를 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제 39조중 “제 7조제 1항 또는 제 10조”를 “제 4조제 2항, 제 7조제 1항, 제 10조, 제



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보조금 등 지원)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에 소요되는 경비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의 검사에 소요되는 경비
3.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생감시원 및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5.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폐기 또는 회수에 소요되는 경비

6. 그밖에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3조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을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제3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로 한다.

제4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9. (생략) 10. "작업장"이라 함은 도축장·집유장·축산물가공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9. (현행과 같음) 10. ----- 축산물가공장· 식육단순절단포장처리장-----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①~④(생략) ⑤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및 축산물의 가공 등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①~④(현행과 같음) ⑤-----가공·보 존·유통 등은----- ----- -----
제7조(가축의 도살등)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가축의 도살등)----- ----- ----- -----



<p>1. 부상·난산·산육마비·급성고창증 등으로 인하여 가축을 즉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p> <p>2. (생략)</p> <p>3. 소·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p> <p>제8조 (위생관리기준) ① (생략)</p> <p>②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의 영업자,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당해 작업장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12조 (축산물의 검사) ① ~ ④ (생략)</p> <p>&lt;신설&gt;</p> <p>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항목·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lt;신설&gt;</p> <p>제15조 (수입축산물의 신고등) ①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19조 (출입·검사·수거)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자로 하여금 축산물의 검사결과 및 수출입실적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관으로 하여금 영업장에 출입하여 축산</p>	<p>1. ----- 한다는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p> <p>2. (현행과 같음)</p> <p>3. ----- 자가소비에 사용하거나, 소·말·돼지·양을 제외한 가축을 가축소유자의 소재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당해 장소에서</p> <p>제8조 (위생관리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동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육단순절단포장 처리업의 영업자-----</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 (축산물의 검사)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검사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용란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p> <p>⑥ -----</p> <p>제12조의2 (유해잔류물질 및 병원성미생물 검사)</p> <p>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의 영업자가 생산하는 식육에 대하여 항생물질·중금속·농약 등 유해잔류물질과 대장균 등 병원성미생물에 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유해잔류물질 검사결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식육의 원료가축을 출하한 농가에 대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출하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농가를 특별관리농가로 지정하고 연속검사를 실시하는 등 출하가축 위생상태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항목·방법·기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5조 (수입축산물의 신고등) ①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9조 (출입·검사·수거) ①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은 -----</p> <p>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p>
---	--



물·시설·서류 또는 작업상황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작업장·축산물운반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물판매업을 제외한 그 이후의 판매·유통단계에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한다.

②시·도지사는 미검사품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출입하여 미검사품의 처리·가공·사용·보관·운반·진열 또는 판매상황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수거를 하는 검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 (축산물위생검사기관) ① ~ ②(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②-----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  
 -----  
 -----  
 -----  
 -----

③-----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  
 -----  
 -----

제20조 (축산물위생검사기관) ① ~ ②(현행과 같음)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때
2. 농림부령이 정하는 대표자 등의 변경사항과 휴지·폐지·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농림부령이 정하는 검사대장을 보관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4. 농림부령이 정하는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한 때
5. 농림부령이 정하는 보고·지도·감독 등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때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 ①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 그밖에 축산물 위생에 관한 검사·지도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축산물위생감시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임명·직무범위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축산물위생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p>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 7. (생략)  <u>&lt;신설&gt;</u>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p> <p>제22조 (영업의 허가) ①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장별토시·도지사외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장별토시·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략)</p> <p>제24조(영업의 신고)          ①제21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p> <p>제32조 (허위표시등의 금지)          ①영업자는 축산물의 명칭·제조방법·성분·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33조 (판매등의 금지) ① (생략)          1. ~ 8. (생략)  <u>&lt;신설&gt;</u>          ② (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위촉방법, 업무범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u>8. 식육단순절단포장처리업</u>  <u>9. 그밖에</u> -----</p> <p>제22조 (영업의 허가)-----          -----          -----  <u>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보관업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육단순절단포장처리업</u>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4조(영업의 신고)          ①-----제7호 또는 제9호-----          -----          -----          ② (현행과 같음)  <u>제31조의2(축산물의 자발적 회수)</u>  <u>①제22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는 당해 축산물로 인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당해 축산물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 회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u></p> <p>제32조 (허위표시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          -----          -----</p> <p>제33조 (판매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u>9.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u>          ② (현행과 같음)</p>
--	--



제34조 (생산실적등의 보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업·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허가 받은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축실적, 집유실적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생산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공표) ① (생 략)

<신 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포상금) 농림부장관은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가공·사용·보관·운반·진렬 또는 판매한 자를 관계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가공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43조 (청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7조 (과태료) ① (생 략)

1. ~ 6. (생 략)

<신 설>

② ~ ⑤ (생 략)

제34조 (생산실적등의 보고) ----- 집유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단순절단포장처리업 ----- 집유실적, 축산물가공업 생산실적 또는 단순절단포장육의 생산실적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공표) ① (현행과 같음)

②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 회수를 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 -----

제39조 (포상금) -----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 -----

제40조(보조금 등 지원)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에 소요되는 경비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의 검사에 소요되는 경비

3.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생감시원 및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5.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폐기 또는 회수에 소요되는 경비

6. 그밖에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3조(청문)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제3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

제47조 (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② ~ ⑤ (현행과 같음)